

협동조합 제도화와

공공육아협동조합

(사) 공공육아와공동체교육

협동조합기본법 대응을 위한 TFT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발적 결사체”

1995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 협동조합이란?

방법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수단

- 사업체를 통해

목적

-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이루기 위해

주체

-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성격

- 자율적인 결사체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995년)



# 협동조합의 가치



#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

---



# 카라바카 프로젝트 - 이탈리아 볼로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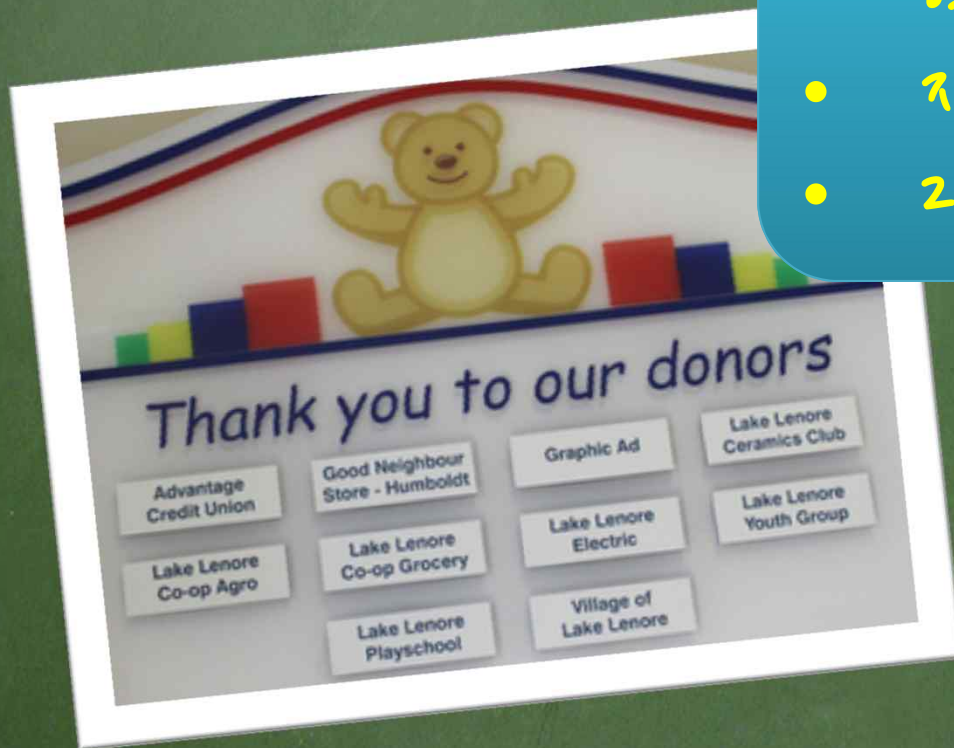
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설립비용 부담  
지방정부에서 땅, 운영비 지원  
주 지역 어린이집의 20.9%





# 캐나다 시스캐치원주 러노어호수 마을 공동육아협동조합

- 2011년 조합원 27명으로 설립
- 학교공간 리모델링
- 지역 신협 등 기부
- 2013년 현재 15명 아이들 돌봄



협동조합기본법 이해하기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 협동조합 법체계

## 1유형

- 법적 기반 존재. 생산자협동조합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영연초협동조합

## 2유형

- 법적 기반 존재. 생산자외 협동조합
  -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 3유형

- 협동조합 관련법 미비
  - 의원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영농, 영어조합법인

## 4유형

- 협동조합 관련법 부재
  - 자활운동, 대안기업, 돌봄노동 등

# 기존 개별법 체계의 문제점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어려움

자율적 운영

어려움

이중 협동조합 간 협

동 불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

자유로운 설립

금융, 보험  
제외  
모든 분야  
가능

5명만  
모이면  
가능

동일적  
협동조합  
정책  
가능

자유로운  
연합회  
구성 가능

#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 신설
-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 3년마다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독점규제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불공정거래행위는 적용)
-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기월 첫째 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ICA 동일)

#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 협동조합의 정의

---

(일반)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 (일반)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재부장관(관계부처) 인가
사업	제한 분야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li> <li>-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li> <li>-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li> <li>-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li> <li>- 기타공익증진</li> </ul>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에 귀속

# (일반)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과정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의 자격	조합원	조합원, 이해관계자 참여
사업	분야 제한 없음	주사업,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
처리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설립 등기 신청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

- 목적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출자 1조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조수 한도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공고의 방법
- 출자금의 양도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기관 및 임원
- 해산
- 외부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

- 보건복지부에 인터넷, 방문, 우편신청 후 총 60일 이내에 허가
- 설립신고서와 구비서류 제출
-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취지서, 수입, 지출예산서, 출자 1조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주사업'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지역사업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취약계층배려형)

## 유의사항

- 신고 또는 인가 받지 않고 협동조합 명칭 사용금지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동일명칭 사용불가
- 현금이나 현물 출자만 인정. 교육 출자는 불인정
- 기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던 단체는 기본법에 의해 전환할 경우 동일법인으로 간주. 단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전환하는 조건

# 앞으로의 정부 정책방향

## 정책목표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정책방향

교육홍보, 제도 개선, 국제협력

## 지원원칙

직접 지원 지양

교육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 지원

행동조합기본법이  
공동육아행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 공동육아의 목표

- 어떤 사회적 위기(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육아가 여성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억압이 되지 않고

여럿이 힘을 합해 즐겁게 참여하는 일이 되며,

아이들이 판에 박혀 찍혀 나오는 복제물이 되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라나며,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



공동육아운동의 목표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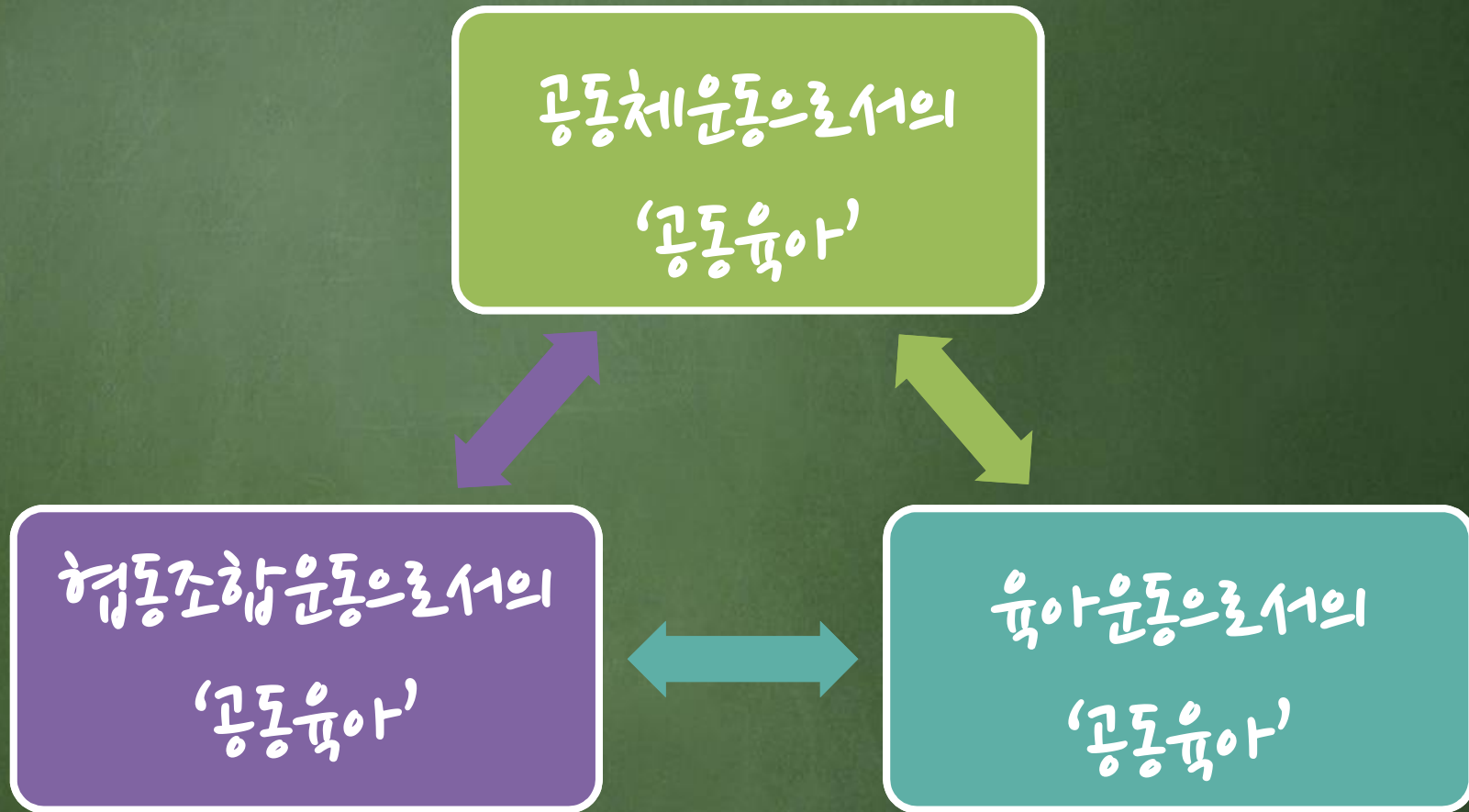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출발

- 진정한 보육환경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내용을 갖춘 변화의 조건을 만드는 작업 필요
- 대안적 삶의 공간을 만들되 그 것이 특수한 하나의 고립된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육아의 모델이 될 만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틀을 갖추는 것 필요

➤ 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육아 터전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나누고 절충하며,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 고안

# 공동육아는

---



공동육아협동조합,  
제도화가 필요한가?



# 1. 법인격을 갖추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 ⇒ 법적 책임주체가 명확해져 민관협력, 대관업무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 방과후협동조합의 법적 근거 확보

## 2. 행정업무가 늘어난다

---

- ⇒ 운영 공개 및 경영 공시 의무
- ⇒登記 의무(설립, 이전, 각종 변경, 합병, 해산 등기 등)
- ⇒ 조합 업무 전문성과 실무 상근인력의 필요성

### 3. 협동조합과 사업체(어린이집/방과후)의 운영이 분리된다

---

- ⇒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는 협동조합과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회계 분리
- ⇒ 협동조합 기관(총회, 이사장, 이사, 감사)과 사업체인 어린이집/방과후 운영 조직(운영위원회, 교사회 등)을 분리
-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린이집/방과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존재
- ⇒ 어린이집/방과후 여러 개를 운영하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 사업, 위탁사업 가능

#### 4.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유형으로 분류된다

---

⇒ 사회적협동조합은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둘 이상의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이용자 성격이 강한 부모, 실질적 제공자인 교사, 여러 조력자/단체들이 협동하여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5.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있다

---

- ⇒ 차등보육료, 품앗이기금, 상호회비, 출자금대여 제도 해당
- ⇒ 상호부조 : 상호부조회비 적립기금 사용
- ⇒ 소액대출 : 조합원에게 소액 신용대출 가능



## 6.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수익사업 가능

⇒ 수익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에 활용

## 7. 법 시행 전에 생긴 협동조합은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

- ⇒ 법 시행 2년 이내 전환하는 협동조합은 동일 법인격으로 간주하여 사업실적, 인허가 및 정책적 지원 승계
  - 고유번호증에 '00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등록했는지 확인!
- ⇒ 어린이집 운영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확인하고, 모든 회원 조합이 함께 대처해야

함께 생각해봅시다



# 1. 법 제정으로 자율성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

---

- ⇒ 협동조합기본법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 ⇒ 제도화와 대중적 확산 / 지원과 규제, 자율성의 확보  
⇒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의 문제
- ⇒ 의무조항 위반 시 지나친 과태료, 벌칙조항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 자율적 운영 침해할 소지 있음  
⇒ 개정 제안

## 2. 법 제정으로 설립 운영이 활성화된다?

---

- ⇒ 설립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 형성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 ⇒ 다양한 철학을 토대로 한 유아협동조합 설립 가능
- ⇒ 영리목적으로 유아협동조합 설립 가능
- ⇒ 공동유아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센터 필요

3. 협동조합으로 신고할 것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을 것인가?

---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익 배당을 하지 않으며,

출자금만 반환하고, 해산 시에도 청산 후 잔여재산을 공익

단체에 귀속시키도록 정관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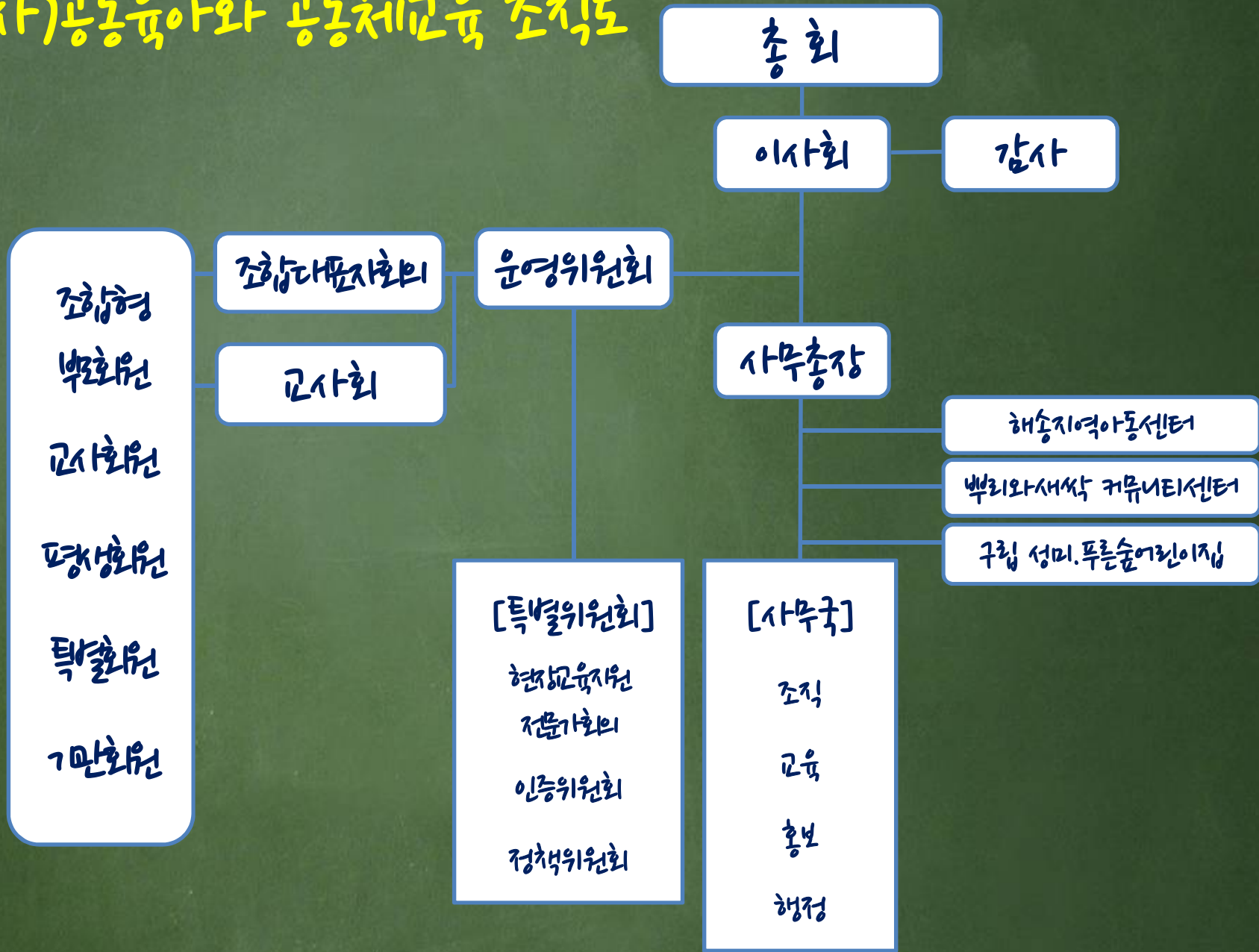
‘보육’이라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게 복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적합

## 4. '공동육아협동조합연합회' 필요한가?

---

- ⇒ 지역별, 업종별, 전국적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 ⇒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설립 가능
- ⇒ 업종별 전국 단위는 하나만 설립 가능
- ⇒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회 설립 논의 필요
-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하나의 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모든 회원 조합이 함께 결정해야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조직도





## 5.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조직 재구성

---

⇒ 현재 공동육아는 법인이 연합회의 역할

⇒ 연합회가 필요하다면 법인, 연합회, 단위 조합들의  
관계와 역할 재설정 필요

## 6. 정관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항은?

---

- ⇒ 필수 포함(ICA원칙) : 조합원과 직원의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간 협력 /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 출자금 환급 / 출자 금액의 변경
- ⇒ 잉여금 배당
- ⇒ 잉여 발생시 처분 순서 : 손실금 보전, 법정적립, 임의적립
- ⇒ 조합원의 자격
- ⇒ 의결권 위임
- ⇒ 보육료 / 조합비 계정 분리(조합, 어린이집 재정 분리)
- ⇒ 탈퇴 시 3개월 보육료/조합비 납부

## 7. 협동조합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과의 관계 검토

**'부모협동어린이집' 명칭 변경 필요**

- ⇒ (현재)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5인 이상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 (변경 예) 협동조합어린이집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단, 어린이집 상시 최소 이용인원은 15인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